
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재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6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6.

발 의 자 : 이재강 · 김 윤 · 장종태
박지원 · 이상식 · 채현일
조계원 · 김준형 · 이광희
염태영 · 김우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과 수도권 중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낙후지역의 범위를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다가 대한민국에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부지를 공여해온 결과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곳들이 많아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5호).
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
나.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“낙후지역”이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.	5. 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-----.
<신설>	가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
<신설>	나.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
6. · 7. (생략)	6. · 7. (현행과 같음)